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으로부터 의원발의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에 관한 부처협의 시점을 정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6.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총리령 제 호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전단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1조의3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각각 “영 제11조의3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을 “영 제11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발의법률안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면 지체
없이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원발의법
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처협의 시점(始點)
을 달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의원발의법률
 안 소관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
 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④ 영 제11조의3제2항-----

 ---.

⑤ (현행과 같음)